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277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2770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11169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1. B

2. C

변론 종결2016. 4. 22.

판결 선고2016. 5. 20.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111694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D 답 3,824㎡ 중 661/4,76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9. 3. 접수 제366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2014. 9. 23. 접수 제392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의 화해중재결정과 그에 따른 합의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 B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주장하는 합의가 기한이 도과되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판결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화해중재결정이나 그에 따른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숙희

판사원용일

판사윤진규